



경기연구원



수신자 내부결재

제 목 임신부 연장근로 금지 운영 지침

1. 경기연구원 행정2018-6004(2018. 6.21)호 「근로기준법 변경(유의)사항 이행철저」와 관련입니다.
2.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
※ 상세내용은 게시판-행정.인사-근로기준법 개정(유의)사항 이행철저 참고
3. 이에 전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임신부 연장근로 금지 운영지침 1부. 끝.

★차장 정용욱 행정지원부장 이인애 경영부원장 김재용 원장

08/28
이한주

협조자

시행 행정2019-11002 (2019.08.28.) 접수 ()

우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/ <http://www.gri.re.kr>
전화 031)250-3218 / 팩스 031)250-3111 / 이메일(love0506@gri.re.kr) / 공개

임산부 연장근로 금지 운영 지침

추진배경

- 근로기준법은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거나 사용자가 임신사실을 안 경우에는 노동자의 본의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.

□ 관련근거

○ 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

⑤항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

※ 위반 시 처벌

근로기준법 제110조(벌칙)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붙임 : 1. 근로기준법 변경(유의) 사항 이행 철저(행정2018-6004, 2018. 6.21)

【붙임 1】

경기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종합연구기관 "GRI"



경기연구원

NEXT경기

수신자 전직원

제 목 근로기준법 변경(유의) 사항 이행 철저

1. 근로기준법 개정(2018.7.1. 시행)에 따른 경기도 평가담당관-7870(2018.6.8.)호 「지방공공기관 근로기준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」 관련 내용을 재안내 하오니,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세내용은 전직원에게 공람 지정한 경기도 공문 내용 일체와 게시관 내용을 참조 바람

2. 아울러, 행정2017-10720(2017.10.23)호 「초과근무 관리방식 이행준수 안내」의 "초과근무 관리방식"을 일부 변경하여 재공지하오니, **1주(월~일요일)의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12시간 한도내에서**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.

붙 임 : 1. 근로기준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1부

2. 초과근무 관리방식(변경) 1부, 끝.

『[휴먼교통연구실/연구위원/김점산]: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회피불가능한 연장근로(휴일근무 등)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1조(탄력적 근무시간제) 적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협의가 필요합니다.』

경기연구원장



대리 박아름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경영본부장 대이은원 부원장 김군수

직장 08.21
대이은조

협조자 연구위원(의견있음) 김점산

시행 행정2018-6004 (2018.06.21) 접수 ()

우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/ http://www.gri.re.kr
전화 031)250-3265 / 팩스 031)250-3115 / (kangsh@gri.re.kr) / 공개